입법의견조사 97-3

입법의견동향

1997. 10.

研究者 : 宋 永 仙 (研 究 員)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Ⅰ. 조사목적 및 현황 7

Ⅱ. 분야별 입법의견동향(1997.6.1.~1997.8.31) 10

◎ 헌 정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3금법관련 입법의견

『헌법』 개정의견

◎ 일반행정 12

『국가인재등용의지역할당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규제개혁관련 입법의견

◎ 내무·지방행정 12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지방교부세법』 개정의견

『지방양여금법』 개정의견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지방재정법』 개정의견

◎ 문화·공보 19

관광관련 입법의견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출판물유통관련 입법의견

『통합방송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학술 22
『교육법』 개정의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노 동 25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재정·경제 27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규제개혁관련 입법의견
금융개혁관련 입법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법인세법』 개정의견
세제개혁관련 입법의견
『한국은행과금융감독기관개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통상·산업 38
기업구조조정관련 입법의견
벤처기업지원관련 입법의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의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저작권법』 개정의견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의견
『주문형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법(가칭)』 제정의견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의견

◎ 농림·해양 4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의견
『농산물품질관리법(가칭)』 제정의견
『수산업법』 개정의견
『어항법』 개정의견

◎ 건설·교통 44
『건축법』 개정의견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의견
농기계 면허증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자연공원법』 개정의견
토지공급확대방안관련 입법의견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의견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 48
『멀티미디어개발육성을위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민·군겸용기술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환 경 49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존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원전보상법(가칭)』 제정의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보건 · 복지 5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견
『의료법』 개정의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전염병예방법』 개정의견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의견
『학교보건법』 개정의견

◎ 법원 · 법무 55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국적법』 개정의견
『뇌물방지특별법(가칭)』 제정의견
『법률구조법』 개정의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의견
『양형기준법(가칭)』 제정의견
『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 제정의견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참고자료 1〉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63
〈참고자료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67
〈참고자료 3〉 도찰행위의 금지를 위한 입법제안 91

Ⅰ. 조사목적 및 현황

1. 조사의 목적과 분류방법

입법의견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반영되기를 원하거나 구체화되기를 원하는 입법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 특히 일반국민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영역에서 입법의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입법의견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의 입법관계자들은 특정한 분야의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우선 이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전문가의 입법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즉시 파악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법의 불비 및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여 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기능하며, 법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편익을 위한 법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입법의견은 입법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목적은 일반국민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견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입법관계자인 정부나 국회에 국민의 입법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내지 입법과정에 기여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방송·통신·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시민운동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정당·각종 민간단체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분석한다.

입법의견은 조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바, 먼저 국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내용의 입법수요를 가지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시 입법의 공

백 내지 불비에 따른 법령제정의견과 법령과 현실의 부조화에 따른 법령개정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간행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 분류체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입법의견을 분류한다.

【입법의견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	제15권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國 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一般行政	제3권4행정일반
內務·地方行政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文化體育·公報	제18권17문화·공보
敎育·學術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6교육·학술(2)
勞 動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財政·經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通商·産業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林·海洋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設·交通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Ⅰ)권35수자원·토지·건설업(1), 제36(Ⅱ)권35수자원·토지·건설업(2),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科學技術·情報通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6권43체신
環 境	제39(Ⅰ)권39환경(1), 제39(Ⅱ)권39환경(2)
保健·福祉	제37(Ⅰ)권36보건·의사(1), 제37(Ⅱ)권36보건·의사(2), 제38(Ⅰ)권37약사, 38사회복지(1), 제38(Ⅱ)권38사회복지(2)
法院·法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2), 제9권9형사법

2. 입법의견 현황

입법의견조사 97-3호에서는 1997년 6월 1일부터 1997년 8월 31일까지 각종 언론매체,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입법의견 총 82건을 접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은 7월중 임시국회를 통하여 행정분야의 7건, 금융분야의 6건, 통상산업분야의 25건, 재정분야의 3건, 건설교통분야의 5건, 사회분야의 6건, 환경분야의 10건, 보건복지분야의 4건, 교육분야의 5건 등 71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고, 연말 정기국회를 겨냥한 많은 입법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하에서는 입법의견을 위 분류기준표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헌정, 통일·외교, 국방, 일반행정 등 16개분야로 나누고, 이를 제정의견과 개정의견으로 재분류하였는 바, 아래의 표와 같다.

최근입법의견 현황

분 야	건 수	제정의견	개정의견
◎ 헌 정	3	1	2
◎ 통일·외교	·	·	·
◎ 국 방	·	·	·
◎ 일반행정	2	1	1
◎ 내무·지방행정	5	1	4
◎ 문화·공보	5	1	4
◎ 교육·학술	5	·	5
◎ 노 동	3	1	2
◎ 재정·경제	9	2	7
◎ 통상·산업	9	2	7
◎ 농림·해양	4	1	3
◎ 건설·교통	7	·	7
◎ 과학기술·정보통신	2	2	·
◎ 환 경	7	4	4
◎ 보건·복지	7	2	5
◎ 법원·법무	13	6	7
총 건 수	82	24	58

Ⅱ. 분야별 입법의견동향(1997.6.1.~1997.8.31)

헌 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현직유지의 공정성 여부

- 자치단체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임(전북지방의회 의원, 광주일보 97.8.28).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서 지방의회 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도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함(전북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광주일보 97.8.28).

■ 정치관계법의 대안

①법인세의 일정비율을 정당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정정당에 분배하는 '법인세 일괄공제제'를 도입하여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②소선거구제 하의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시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화일보 97.6.5, 5면).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80~81면)·제95-4호(56~57면)·제96-1호(15면)·제96-2호(16면)·제97-2호(12면) 참조.

3금법관련 입법의견

■ 정치보복금지법안

특정인이나 정당·단체에 대한 지지·반대를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정당·단체에 대하여 박탈, 세무조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회교섭단체가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치보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차별대우금지법안

성·종교·신체·용모·지역 등의 차이로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차별대우방지 및 해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에 차별 해소를 위한 계획을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 대통령친족의부당행위금지법안

대통령 친인척이 국정운영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시는 처벌하도록 명문화하며, 자신의 학력·경력 등과 관계없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

: 이상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문화일보 기획·연재, 97.8.5, 2면.

『헌법』 개정 의견

■ 대통령권한의 분산

-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리의 신분과 임기를 보장으로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총리 본래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총리의 각부장관 임명제청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임면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형식적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리는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의 자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한 바, 현행 총리제도로는 정치권력을 분산시킬 수 없음. 총리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임기조항을 신설하여 임기보장의 책임총리제를 마련하도록 함(어수영 이화여대교수, 문화일보 97.6. 11, 4면).
- 현재는 대통령이 당총재로서 국회의원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한의 분산을 위하여 지구당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지구당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구당대회에서 경선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함(어수영 이화여대교수, 서울신문 해설, 97.7.8,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50면)·제95-2호(82면)·제95-3호(81면)·제95-4호(58면)·제96-2호(18~20면)·제97-2호(15~16면) 참조

일반행정

『국가인재등용의지역할당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인재지역할당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인재를 키우고, 서울과 지방간의 인재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가인재등용의지역할당제에관한법률(가칭)』을 마련하여 국가고시(사법시험·행정고시 등)와 주요 자격시험(회계사·변리사 등)의 합격자를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하도록 함(인재지역할당제 추진위원회, 무등일보 97.8.24).

규제개혁관련 입법의견

■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1년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의 단축과 각종 서류준비로 인한 재정적·시간적 낭비의 예방을 위하여 ①공장설립 허가시 농지전용,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하고, ②관계법령에 의한 검토기준을 편람으로 작성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이 주지하도록 하며, ③관계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 이의 지연을 예방함. ④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인허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도록 함(이목영 경기도청 대민봉사 담당관실 건축주사, 동아일보 97.6.23, 33면).

내무·지방행정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관련 입법의견

■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소지

개인정보가 세무서, 경찰서, 의료기관, 은행 등 각종 기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수집되는 때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바, 기관 상호간 자료교환의 가능으로 인한 개인기록의 집중시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어 위헌의 요소가 될 수 있음(변재옥 영남대 교수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폐해」, 『통합전자주민카드관련 토론회』, 영남일보 97.6.13).

※ 「입법의견조사」 제11호(77면) · 제97-2호(20~21면) 참조.

『지방교부세법』 개정의견

■ 지방예산 지원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재 13.27%에서 16%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적용을 현실화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야 함(이의근 경북도지사, 영남일보 97.8.14).

『지방양여금법』 개정의견

■ 자치구로의 양여금 지원 확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면 자치구는 도로정비사업비 명목으로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나, 현행 『도로법』과 내무부지침은 20m미만 區도로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자치구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 대해서도 도로정비사업명목의 양여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市稅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재원확보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도모하도록 함(강현중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영남일보 97.8.12).

※ 「입법의견조사」 제96-2호(28~29면)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보

- 지방의 자율성을 촉진하고 국가와의 상호 균형 있는 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①중앙-지방간의 중복된 기능을 재분배하고 지방의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지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②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축소하고, ③일부 국세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하여야 함(오연천 서울대 교수, 조선일보 칼럼·논단, 97.6.13, 5면).

-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보를 위하여 ①△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유권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자치단체 사무집행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권(유권자 총수의 1백분의 1이상 또는 5천명이상의 연서)을 도입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에게 자치단체 사무집행에 대한 감사(유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의 연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③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함. ④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읍·면·동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분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⑤지방의회의 의결사항도 △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과 기구·정원,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 등으로 확대하고,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⑥광역·기초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일수를 각각 10일·7일에서 15일·10일로 늘리는 한편, 연간 회의 총일수를 1백20일·80일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함.

■ 주민참여의 제고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법률로 규정하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투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감사청구권과 조례제정권도 신설함. 논란이 되어 오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정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수지급과 의정활동에 대한 실비 변상을 한다'로 개정하도록 함(전국 의장단 협의회, 서울신문 97. 6.19, 21면).

■ 주민투표제의 효율성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는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투표법(가칭)』을 별도의 단행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따른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제민일보 해설, 97.8.5).

■ 주민발안제 도입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권을 도입하여야 함(전국 시군구의회의장 시도대표협의회, 강원일보 97.6.13).

■ 주민투표법의 선결과제

『주민투표법(가칭)』을 제정할 경우에는 우선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식별한 다음,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요소(다양한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통합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약화, 선거과정에 있어서 정당 후보자의 선택에 정책 본위보다는 인물 정당 중심의 선거)의 근본적 수정에 노력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①주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이 주민투표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야 하고, ②주민투표 참가자의 지역과 범위, 사전 준비기간의 정도, 문제제기와 정보제공의 절차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③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제를 고려한 단순다수결 혹은 특별다수결의 결정방법을 택하도록 하고, ④주민투표를 지역주민의 합의도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한계를 규정하고 주민투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함(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주민의 직접참여통로 확대」,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발제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서울신문 97.8.15, 10면).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촉구 결의문(서울특별시)

〈지방자치권의 확대〉

△조례의 입법적 지위를 높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존폐, 통합 등에 관한 조직권과 공무원 정원조정, 고위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권 등의 내무부의 권한과 교육, 경찰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며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특수사안에 대하여만 중앙부처 감사를 통하여 실시함.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의 확대〉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인하여 지방세 규모는 21.6%에 불과하여 지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바,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 또는 공동세로 전환하고 소득과 소비 수준에 맞는 탄력적인 세입구조를 확보하고 △내국세 총액의 13.27%로 확정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이전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배제되는 현재의 재정배분방식을 개선하며 △교육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신설하고 각종 교부금 징수에 있어서 징수교부율을 상향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필요한 부담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위부담금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급보좌관과 실비보상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와 제소권을 내무부장관에게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인 바, 이를 삭제하며,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단체장과 협의 하에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함.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환제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도록 함.

: 이상 서울시의회 개원 2주년에 즈음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제도정치촉구결의문」, 서울의회보 97.7.30(제22호), 7면.

■ 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가칭) 제정의견

민생과 밀접한 각종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단체·기관·자치사무 등 4종의 사무구분을 국가·공동·자치 등 3종으로 단순화하며, 사무 및 기능배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내무부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서울신문 97.6.28, 6면).

■ 지방재정의 자주성

자치단체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 '지역개발공고'의 설립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경계를 조정하며,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함(내무부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서울신문 97.6.28, 6면).

■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직권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

고,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경우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재 임의단체인 '자치단체장협의회'를 제도화하며, 총리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두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내무부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서울신문 97.6.28, 6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3~44면)·제5호(49면)·제10호(79~80면)·제13호(57~58면)·제94-2호(82~83면)·제94-6호(85면)·제95-2호(86~89면)·제96-1호(23면)·제96-2호(29~30면)·제96-3호(23~26면)·제97-2호(21~22면)

※ 〈참고자료 1〉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 참조

『지방재정법』 개정의견

■ 국가·지자체 동일세원 공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①재산 보유과세를 강화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시가로 현실화하여야 하며,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는 세원분리방식을 지양하고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하함. ③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한 바, 탄력세율을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8개 세목에 적용하고, ④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환경보존세, 석유류에 과세할 수 있는 도로사용세, 52년~57년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는 광고세 등의 도입을 고려하도록 함. 지방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의 미비규정에 대한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는 바, 선행적으로 조례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함(최영태 참여연대 전문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 ; 한국일보 97.6.20, 33면).

※ 「입법의견조사」 제95-4호(95면) 참조.

문화 · 공보

관광관련 입법 의견

■ 관광관련 법규 · 제도의 개선 시급

관광관련 중소기업의 범위가 일반여행업 2백인 이하, 관광호텔 1백인 이하, 전문휴양업 20인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바,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제민일보 해설 97.6.13).

■ 불합리한 해양관광개발 시책

해양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남해안의 대부분이 『자연공원법』상 해양국립공원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구지정이 불가능한 바, 해상국립공원지구에 집단시설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수산자원보존지구를 재정비하여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개발제한지역을 최소한이나마 해제하는 방안을 재고하여야 함(광주일보해설, 97.6.11).

『문화재보호법』 개정의견

■ 인간문화재 제도의 개선

생활문화의 전승을 위한 인간문화재 제도가 자치단체의 예산사정과 운영의 묘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바, ①무형문화재 관련제도의 합리적 보완 · 개선과 함께 문화재관리국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②예술원과 학술원 회원의 예우를 참고하여 연로한 공예기능 보유자를 명예직으로 대우하며, ③공예분야의 경우는 내면에 잠재한 기예능의 우수성에 따라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므로 전시가 아닌 실연을 통하여 평가되도록 개선함(고상렬 한국전통문화사업단 이사, 동아일보 97.7.14, 33면).

■ 매장문화재의 보호

- ①현행 법률이 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규제 및 발굴시의 처리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전조사, 사전·사후관리 및 보존에 관한 보완이 요망되며, ②'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현행법상의 매장문화재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③문화재영향평가제와 매장문화재보호지역 지정제를 도입하고, ④발굴에 앞선 지표사전조사를 의무화하여야 함(홍준형 서울대 교수,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 -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문화재관리국 주최, 문화일보 97.6.9, 27면).
- ①문화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개정으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문화재정책의 전문성 제고와 일관성 유지를 도모하고, ②문화재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중장기(5개년)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을 수립하도록 강제규정하여 문화재관리국이 직접적인 상부기관이 아님으로 빚어지는 사실상의 지도·감독 소홀을 예방하며, ③도로 건설이나 공단 조성 등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문화체육부와 사전 협의하여 매장문화재 훼손을 방지함. ④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시는 사전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⑤시·도 문화재 담당자는 학예직 전문가로 하되, 전문가가 부족한 문화재관리국에는 문화재연구소, 박물관의 학예직 직원을 파견·순환 근무하도록 하여 문화재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함. ⑥『정부조직법』상의 유일한 外局인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키고 문화재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지방청을 설치하도록 함(한국일보 기획·연재 97.8.6, 17면).
- 학술발굴과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을 제외하고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조사도 없이 굴착공사가 진행되어 문화재 훼손을 초래하는 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서는 지형을 변경하는 공사는 강제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국가차원의 발굴조사기관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며, 학술용역발굴을 전담하는 사단법인체 및 재단법인체 구성과 함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인력에게 국가인증자격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소규모 개별조사를 담당하도록 함(배기동 한양대교수, 영남일보 97.7.24).

※ 「입법의견조사」 제8호(82면)·제11호(84~85면)·제12호(80면)·제13호(63면)·제94-3호(95면)·제96-2호(31면)·제96-3호(28면)·제97-1호(21면)·제97-2호(22면) 참조.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언론전횡의 방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및 특정인의 신문사 소유집중을 30%이하로 제한하고, 소유·경영·편집의 분화를 꾀하며, △지면의 사유물화를 막기 위한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편집규약 조항을 삽입하여 편집의 독립성을 명문화하여야 함(민변, 한겨레 97.8.11, 16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43~44면)·제7호(62~63면)·제8호(85면)·제96-2호(33면)·제96-3호(30면) 참조.

출판물유통관련 입법의견

■ 재고도서 유통 전국체인망 설치

재고도서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재고도서를 전문적으로 유통시키는 지역을 조성·강화하고 전국 체인망을 설치하며, 출판문화단지나 서화촌에 유통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한기호 창작과 비평사 이사, 동아일보 97.8.8, 25면).

『통합방송법(가칭)』 제정의견

■ 통신·방송위원회의 통합

-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방송과 통신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정책,

운용 및 편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사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감시하는 통신위원회가 각기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 바, 방송매체의 등장이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방송산업의 문제를 고려하여 독립 규제기관화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함(한국언론학회, 『통합방송법의 제문제』 토론회 자료집; 세계일보 97.8.25. 16면).

- 정치권력과 방송의 유착이나 특정세력의 여론독점을 상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후에 방송시장의 탈규제가 이루어 지도록 함(장호순 순천향대학교, 한국언론학회, 『통합방송법의 제문제』 토론회 자료집; 세계 97.8.25, 16면).

※ 「입법의견조사」 제97-1호(22~23면) 참조.

교육·학술

『교육법』 개정 의견

■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산하기구로서 법제화되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대변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되고 심의된 내용을 학부모총회, 학년학부모회, 학급학부모회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급학부모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만나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 및 교육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민주적 선출절차를 거쳐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들에 의하여 학교기부금을 투명하게 접수·관리할 수 있는 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교운영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함(시민의 신문 해설, 97.6.9).

※ 「입법의견조사」 제7호(61면)·제8호(76면)·제10호(82~83면)·제11호(81면)·제12호(78면)·제94-1호(54~55면)·제95-4호(65~67면)·제96-1호(25면)·제96-3호(33면) 참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교육위원회 의결권 박탈 불가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 바, 법률상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권, 예산안과 결산심의 의결권, 각종 수수료 및 부담금 등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등이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환원되어야 함(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제민일보 97.8.13).

※ 「입법의견조사」 제3호(55~56면)·제8호(86~87면)·제12호(82면)·제94-6호(93~94면)·제95-1호(89면)·제96-2호(39~40면)·제97-2호(24면) 참조.

『청소년보호법』 개정의견

■ 청소년보호법 적용상의 문제점

- ①정부부처 소속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방송을 규제하는데 관여하는 것이나, 등급제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사전심의하는 것, 『청소년보호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사에 대하여 검사 또는 조사하는 것 등은 검열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고, ②문화체육부 별정직 1급상당의 인사가 위원장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방송위원회에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조정을 요청하거나 등급구분을 요청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방송위원회, 「청소년보호법시행령안에 대하여 문체부에 제출한 의견서」, 문화일보 기획연재 97.6.2, 21면).
- 『청소년보호법』의 중요 역할인 청소년 유해 매체의 유통 규제는 유해 판정시 '18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와 함께 포장할 것을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바, 책 대여점과 만화업소의 경우 책값보다 포장비가 더 들게 되는 등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조정이 요망됨(한겨레신문 기획·연재 97.6.5, 14면).
- 성년·미성년을 구분하는 청소년관련법상의 연령규정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음주·흡연이 용인

되는 사회관행에 따라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고등학생 이하인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취지의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민법』과 같이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바, 법과 현실의 괴리를 시정하는 법개정이 요망됨(중앙일보 기획·연재 97.7.2, 4면).

『학교급식법』 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시설경비 부담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인 바, 자치단체 주민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 보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교육자치 내지 주민자치라는 관점에서 관할 행정기관들은 급식시설에 관한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만을 결정하고 그 외의 설치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와 학부모 측에 일임하여야 할 것임(전재경, 「학교급식의 법률관계」, 『부천시 중·고등학교 급식시행을 위한 학부모공청회』 자료집, 97.7.7).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94면)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폐원학원의 재설립 불가

현행법에 강사의 자격은 규정하고 있으나 설립자 자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실제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 당한 학원이 자진폐원후 친지 등으로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재설립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일정기간 동안은 같은 장소에 재설립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중임(교육부, 부산일보 97.6.20).

※ 「입법의견조사」 제4호(29~30면)·제7호(63면)·제10호(83~84면)·제11호(86면)·제12호(82~83면)·제13호(67~68면)·제94-1호(62면)·제94-2호(93면) 참조.

노 동

『근로기준법』 개정의견

■ 퇴직금 일부 우선변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 도산 또는 퇴직시점전 일정기간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부분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한 근로자 전체퇴직금의 일정비율 △전체퇴직금중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일정액 등을 우선변제의 범위로 하고자 검토중임(당정, 문화일보 97.8.25, 2면).

※ 「입법의견조사」 제6호(74~75면)·제95-1호(85면)·제96-3호(35면) 참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견

■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등

①사업주에 의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가 표면적으로는 차별이라고 보여지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 性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게 적용될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때에는 차별로 보는 '간접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성차별의 정의를 확대하고, 기회의 평등과 함께 결과의 평등까지도 보장하도록 하며, ②'직장내 성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에 의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마련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의 실시하며,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함. ③육아휴직비용의 공적부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무급인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상임금 범위내에서 휴직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④직장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영유아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함. ⑤'사업주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일차적으로 사업주의 차별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는 그러한 조치가 성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기업운영상 필요불가결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여성의 신문 해설, 97.6.30).

※ 「입법의견조사」 제94-6호(86면)·제95-3호(88~89면)·제96-3호(35~36면)·제97-1호(25면) 참조.

『외국인근로자 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찬반의견

- 산업연수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은 물론 법적 신분도 보장하지 않아서 저임금, 산재, 인권유린, 차별대우, 직장이탈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노동권 등 기본권의 보장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
-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은 임금부담의 완화로 이익을 취하는 반면, 이는 주택·의료문제, 각종 범죄 야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외국인노동자고용분담금제'를 도입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분담금을 거두어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자동화 도입 등을 지원하도록 함.
- △노·사·정(공익) 대표들로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 설치하여 외국인력관리를 일원화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도입규모와 관리,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하여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국가지정 공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고, △현지 파견 노동부 공무원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사업주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력송출회사에 의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를 방지하도록 함.
- 현행 『헌법』 조항이나 근로기준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권리의 제약을 초래할 것임.

: 이상 한겨레신문 해설, 97.6.2, 25면

※ 「입법의견조사」 제95-1호(87~88면)·제95-2호(93면)·제95-3호(90~91면)·제95-4호(72~73면)·제96-1호(29면)·제96-2호(43~44면)·제96-3호(43면)·제97-1호(34~35면) 참조.

재정·경제

『국세기본법』 개정의견

■ 납세자의 세무정보접근권 보장

향후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자권리를 보완하는 작업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과 모순되는 현행 조세절차에 관한 법규정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①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인 절세권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하고, ②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조세절차 인정범위를 객관화하여 명시하여야 함(최명근 시립대교수, 『납세자에게 권리를』 워크샵,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자유기업센터 주최; 문화일보 97.8.26, 12면).

※ 「입법의견조사」 제2호(48~49면)·제13호(68면) 참조.

규제개혁관련 입법의견

■ 개혁주체에 예산권한 부여

재정경제원의 경제기획기능을 소거하고, 예산실을 이관하며, 이관된 예산실에서 규제개혁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제3자적 위치에서 규제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함(황성돈 외국어대교수, 서울신문 칼럼·논단 97.7.5, 10면).

※ 「입법의견조사」 제97-1호(35~36면)·제97-2호(28~29면) 참조.

금융개혁관련 입법의견

■ 2단계 금융개혁안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지휘에 있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정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지휘, 외화 여·수신과 외국환 포지션 관리 등 일부 외환업무 확대, 은행의 채무 인수 및 보증과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은행의 건전성 경영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 하도록 함. 한국은행의 내부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정관변경 승인권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갖고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감사는 폐지하여,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함.

〈금융감독제도〉

금융감독 최고 의결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이에서 금융관련 법률의 재정·개정권을 행사하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상대로 규제 및 감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금융산업 진입〉

금융산업으로의 진입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소유지분한도를 4%로 통일하고, 지방은행은 15%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10% 지분을 허용함.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최저 자본금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금융산업의 퇴출〉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기관 도산시 예금자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법제화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 가교은행을 설립함.

■ 한국은행 행정기능의 위헌여부

①한국은행이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독립성·공정성·능률성·전문성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으로써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조직이나 특정의 개인에게도 행정적 기능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통설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

서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통화신용정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도 『헌법』체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②한국은행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의 감독·통제를 받는가의 여부는 『한국은행법』처럼 대통령이 한국은행총재를 비롯하여 금융통화위원·은행감독원장 등을 임명하고 감사원이 업무감사를 행한다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장관이 한국은행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행정적 지시와 감독·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도 『헌법』 이론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③감독관할 정책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화신용정책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만은 통화신용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통화신용정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은행통제기능과 은행감독기능까지 또 다른 제3기관의 소관으로 한다면 통화신용정책기능 그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임(권영성 서울대교수, 문화일보 해설 97.8.1, 6면).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96면)·제97-1호(36~37면)·제97-2호(30~31면)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필요성

금융실명제가 일시에 인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 불편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 불법자금 거래의 규제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던 바, 공평과세 구현과 부정·비리와 관련된 불법자금 거래방지를 위하여 대체 입법하고자 하는 것임(남궁 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변칙돈세탁 규제 타당

『자금세탁방지법(가칭)』에서 불법자금의 범위를 특정 범죄행

위로 얻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자금,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자금은 변형되거나 처분되더라도 여전히 불법자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자금세탁 행위로 변형된 자금을 불법자금 범위에 넣는 것은 타당함(박태규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차명거래의 불법화

①금융기관을 통하는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시 금융기관 거래자 모두에게 벌칙을 적용하여, 원금의 40%를 과징하여야 하고, ②만 30세 미만자의 명의로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조사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30세미만은 3천만원, 30세이상은 5천만원으로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③『자금세탁방지법(가칭)』 벌칙과 관련하여, 상습적 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중대 과실로 인한 자금세탁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과중한 처벌을 과하도록 함(김일수 고려대교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①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는 미성년자와 탈세혐의 등 두가지 경우 외에는 면제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거래의 불편해소를 위하여서는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②중소기업에로의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하여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고, 같은 출자라도 기업 리스크 정도를 감안하여 면제비율을 차등적용하여야 함(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

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보험 예외인정 부당

보험가입시 가입자가 확인되고, 보험 모집시 실명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거래를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고,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실명확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 소득세나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자금세탁방지법(가칭)』 대상금액을 건당 1억원으로 정한 뒤 점차 하향조정하는것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임(노형권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중소기업여건의 고려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될 중소기업의 범위를 사치 또는 소비조장 업종이 아닌 제조업, 특히 벤처기업으로 한정하여 특혜를 차등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1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20억~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자금 회수방법, 자본금의 범위 등을 기업실정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함(최배진 선일옵트론(주) 대표이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중소기업 단서조항의 배제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에 있어서 다른 과

세자료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조사면제가 배제되는 단서조항은 중소기업에의 출자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 8월 이후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를 위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함(엄기웅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실명제 무력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지하자금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실명제 실시이후 국세청에서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출처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바, 『자금세탁방지법(가칭)』의 경우 고액거래시 세무당국에 은행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조항의 미비함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기준이 너무 낮은 것임(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97.8.28).

※ 「입법의견조사」 제6호(80면) · 제8호(90면) · 제10호(93~94면) · 제11호(87~88면) · 제12호(83~85면) · 제13호(68~69면) · 제94-1호(64~65면) · 제94-2호(95~96면) · 제94-5호(105~106면) · 제94-6호(95면) · 제96-1호(31면) · 제97-2호(30~31면) 참조.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의견

■ 독립공채의 상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독립공채를 상환하는 것은 민족정신에 대한 보상으로 현

행법에 정한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현행법으로서는 상환이 불가능한 기 신고자와 향후 예상되는 추가신고자에 대한 상환이 가능하도록 신고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자계산기간을 명백히 하도록 함(재정경제원,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97.8.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OECD의 경성카르텔금지권고안 관련

①점진적인 카르텔 허용규정의 축소와 함께 카르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②카르텔의 형성시 유형에 무관하게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WTO 보조금 제도와 같이 유형을 세분화하여 과징금 부과의 내용을 달리 할 수도 있음(심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 국제세미나 지정토론내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산업연구원 주최, 1997.9.3).

■ 사업자단체 기업규제 철폐

법령상 사업자단체 가입을 강제하거나 사업자단체가 자율감사란 명목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사업자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종 신고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정부위탁 업무 중 △사업자단체에 자율감시의 명목으로 감시나 고발 등의 기능을 위탁한 경우 △사업자 단체에 신고·등록 및 인가 기능이 주어진 경우 △회원사의 가격이나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사업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을 주요 규제개혁 대상업무로 하고, 이중 법령으로 협회나 조합 등 사업자단체에 가격이나 서비스요율 결정을 위임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조항의 삭제나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협회의 설립이나 가입이 강제된 경우 혹은 설립이나 가

입을 협회의 정관에 위임한 후 정관에서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정관을 폐지하거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공정거래위원회, 문화일보 97.6.23, 1면).

■ 각종법령상의카르텔제도정비를위한특별법(가칭)의 제정

개별법에 근거한 각종 카르텔 제도를 일괄 정리하여 정비함이 시간상·업무효율상 효과적인 바, 개별법상의 카르텔제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카르텔제도를 특별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함(공정거래위원회, 내외경제신문 97.7.3).

※ 「입법의견조사」 제2호(47~48면)·제3호(61~63면)·제94-5호(107면)·제96-1호(32면)·제96-2호(52~53면)·제96-3호(45~53면)·제97-2호(32~33면) 참조.

『법인세법』 개정의견

■ 계열간 거래가 조작 방지

기업이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 법인소득을 넘겨주는 '이전가격조작(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어발식 사업확장·탈세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바, 부당 내부거래와 내부차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격기준을 국제조세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세제에서처럼 비교대상기업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정상가격 범위율의 적용 등을 검토중임(재정경제원, 세계일보 97.6.3, 10면).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인방안〉

구분	내 용	시기
재무구조개선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하여 부동산을 팔면 특별부가세 면제. 단, 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 거쳐야 하며 매각후 1년이내 상환하여야 함	98년
	개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때 이중과세문제 완전해소(공제확대)	98년

구조조정 지원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 부동산 매각때 양도세 감면요구를 완화하고 세금을 늦게 내는 과세이연제도 함께 도입	98년
	기업합병차익에 합병때 과세하지 않고 매각시점에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98년
자금조달 활성화	유상증자한도 적용대상 그룹을 10대에서 5대로 축소	97년 하반기
	상장회사협의회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요건 폐지	97년 하반기
	상장기업 증자요건 폐지	99년말까지

〈규제방안〉

구분	내 용	시 기
과다차입 억제	30대그룹 계열사·상장기업·장외등록기업중 차입금이 자기자본 5배를 넘으면 초과차입금에서 나가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음	2000년 1월
	30대그룹 계열사·상장기업·장외등록기업중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를 넘으면 초과차입금에서 나가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음	장기
	차입금이 자기자본 5배를 넘는 기업에는 접대비·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추가 축소	미정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자본의 3배를 넘으면 초과분에서 나가는 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음	미정
접대비 축소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현행대비 98년 80%, 99년 60%, 2000년 50%로 축소	미정
	1인당 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골프장 등 특소세가 부과되는 곳에서의 접대비는 불인정	미정
	접대비의 50(군)~80%(서울)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손비인정(현행 40~75%)	미정
	의사·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접대비 기초금액을 연간 6백만원으로 낮춤(현행 2천4백만원)	미정

	공기업 접대비 한도를 일반기업보다 30% 축소	미정
	기밀비 한도를 현재의 1/3(중소기업)~1/2(대기업)로 축소	미정
기부금 축소	공익성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업 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현행 7%)로 낮추고 자기자본 기준(현행 2%)은 없앰	미정
재무구조 개선	30대 그룹의 여신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	7,8월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2000년 4월1일부터 완전해소(현행 98년 4월 100%)	2000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 차등적용	미정

: 경향신문 97.7.1, 8면.

※ 「입법의견조사」 제8호(92면)·제94-6호(96~97면) 참조.

세제개혁관련 입법의견

■ 세정의 합리화

경제규모가 대형화되고 경제·사회구조가 다기화·고도화함에 따라서 세정의 기본골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의 기본방향을 조세체계의 정비,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효율적인 지방세제의 정립, 경제의 성숙화에 대비한 세제의 정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음.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세제의 단순화를 위하여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없는 세목의 폐지, 목적세의 정비, 조세감면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소득유형간 그리고 소득계층간 수직적·수평적인 형평성의 제고가 필요함.

〈효율적인 세정의 확립〉

세정의 비효율성을 시급히 개선하여 과세공평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함.

〈효율적인 지방세제의 정립〉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임.

〈경제의 성숙화에 대비한 세제의 정비〉

모든 거래가 전산화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미래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세제로 간주되는 소비세제로의 이행에 대한 준비로 우선 과표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기반 조성〉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개념의 설정은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함.

: 이상 임주영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21세기 국가과제 세제부문 공청회』 조세연구원 주최, 97.7.16 ;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한국은행과금융감독기관개편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한국은행 개편안

한국은행 개편안의 중대한 문제점은 중앙은행의 업무대상을 시장 참여적 통화신용정책기능으로 국한시키고, 거시경제적인 통화신용정책,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 및 외화관련 업무를 중앙은행의 업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인 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존속시키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한국은행총재로 바꾸고 △한국은행의 업무영역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업무와 외환업무까지 포함시키며, △금융감독기관은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은행 개편방안일 것임(이근식 서울시립대교수, 시민의 신문 97.7.7).

기업구조조정 관련 입법의견

■ 진입 · 퇴출 · 확장의 장벽 제거

현재 3백25개 산업 중 2백5개 산업에서 각종 진입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제 철폐와 함께 관행상의 장벽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임. 부실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할 때나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중복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구조조정을 저해하므로 기업합병시 의제배당소득(10~40%)이나 법인세(28%) 등을 비과세하고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20%)도 50% 감면하여야 하며, 재벌 계열사에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타사 주식소유를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은 3년간 유예를 두어 완화하고, 발행주식 총수 25%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시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 1주'를 강제 공개매수 하도록 한 것도 30%이상 취득시로 조정하여야 함(김휘석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제도의 도입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문, 대한상의 주최; 동아일보 97. 6.11).

■ 기업분할제도 도입

기업내 중복된 사업분야의 정리를 유도하고, 타 그룹에 계열사 전부나 일부를 매각하는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여 그룹간 M&A를 촉진하며, 자산의 매각시 특별부가세의 50%를 인하 하도록 함(산업연구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 세미나』, 조선일보 97.7.12, 18면).

■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①기업의 합병시 △이월 결손금의 승계 불인정과 법인세(28%) 부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10~40%) 부과 △합병후 자산매각시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20%)

부과와 같은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완화함이 시급하고,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증권거래법』상 강제 공개매수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③『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에 대한 출자의 전환을 허용하여야 함(통상산업부주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미나』, 부산일보 97.6.21).

벤처기업지원 관련 입법의견

■ 벤처기업의 조달입찰 참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조달청장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응시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소규모공장운영으로 공장등록의무가 없어서 공장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조달 입찰참여에 배제되어 벤처기업 육성에 장애가 되므로 이에 관한 법개정이 요망됨(대덕 21C회; 대전지역 연구원창업가 모임, 동양일보 97.8.19).

※ 「입법의견조사」 제97-2호(40~41면) 참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공단환경관리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규모에 무관하게 환경관리청에서만 지도·단속하고 여타의 대기·수질에 관계없이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는 도지사가, 배출량이 적은 4~5종만 일선 시장·군수가 지도·단속하도록 하여 공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철소나 태인공단·초남공단 등의 관할구역에서 지역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절름발이 업무형태가 초래되므로 지도단속권을 해당자치단체에도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환경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함. 현재 환경청에서만 공단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자치정신에 위배되고 단속의 신속성 등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저해하는 바, 제도변경이 절실함(무등일보 해설 97.7.10).

※ 「입법의견조사」 제8호(93면) 참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 의견

■ 옥외광고물 관리권한의 지방이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가 규제일변도이고, 대도시를 기준으로 표시방법·설치수량이 규정되어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며,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경우 이외에는 외국어 표기가 어려운 바,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법령개정이 요망됨(동양일보 해설 97.8.22).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외국인 투자의 규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규제위주로 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등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대폭 개정하였으나 하위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바, 이의 개정·보완이 요망됨(제민일보 해설, 97.8.28).

※ 「입법의견조사」 제6호(85~86면)·제16호(102면)·제96-1호(37면) 참조.

『저작권법』 개정의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해결권 부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강제력 부재로 조정성립률이 저조하여 민사소송의 부담이 지워지는 현실의 개선을 위하여 조정담당자의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결정하는 일종의 강제조정인 '직권조정제'를 도입하고, 순수한 민사적 분쟁에 있어서 해당 소송의 행정심판 전단계절차로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를 도입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1차적 분쟁해결권을 갖도록 함(정상기 한남대교수, 전자신문 97.8.21).

※ 「입법의견조사」 제9호(101~102면)·제13호(74~75면) 참조.

『제조물책임법(가칭)』 제정 의견

■ 리콜제도의 보완

리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피해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관리·감독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리콜명령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리콜 거부시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리

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소비자제품안전법(가칭)』이나 『제조물책임법(가칭)』의 제정과 함께 다수 소비자의 유사한 피해에 대하여 동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가칭)』도 마련하도록 함(동아일보 사설, 97.8.30, 3면).

『주문형반도체 산업육성및지원법(가칭)』 제정의견

■ 주문형반도체(ASIC)산업 육성 및 지원

국제 메모리 시세 급락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에 타격이 있는 바, 주문형반도체(ASIC)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문형반도체(ASIC) 전문업체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로 자원의 공동활용과 인력양성 및 해외정보제공을 촉진하도록 함(정호선 국민회의 의원, 전자신문 97.7.10).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의견

■ 전력사업의 독점문제

-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는 ①電原간의 우열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②경쟁체제하에서는 업체가 이윤확보를 위한 최적수단으로서 공급정책과 수요관리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것과 대비하여 독점체제는 손쉬운 이윤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공급위주 시스템의 유지를 고집하게 되고, ③독점산업의 비대화에 의하여 정부기구의 관리와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바, 향후 독점화되어 있는 전력사업의 구조를 다변화하고, 전력수요자인 시민이 관여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의 도입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서왕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경제정의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본 한전의 전력사업 독점 문제」, 『한국전력 전력사업독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시민토론회』, 환경운동연합·인천앞바다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 97.7.31).
- 원자력 발전소, 대형 화력 발전소, 양수발전소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주된 원인은 한국전력의 전력사업

독점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의 소홀 등에서 야기되는 것인바, 전력생산의 다변화 도모와 함께, 시민이 관여하는 전력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공사가 전력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이필렬 방송대교수, 「한국전력에 의한 전력사업 완전독점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한국전력 전력사업독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시민토론회』, 환경운동연합·인천앞바다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 97.7.31).

- 한전의 소유분산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여 ①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주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분이양하고, ② 전력수요의 신증가분을 민간사업으로 이양하여 민간의 자본참여를 유도하며, ③전력자치구제를 실시하여 자치구별로 차등적인 전기료의 부과·징수가 이루어 지도록 함(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력사업의 독점에 대한 법적규제」, 『한국전력 전력사업독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시민토론회』, 환경운동연합·인천앞바다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 97.7.31).

농림·해양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개정의견

■ 농수산물유통시장기능의 정상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경매 없이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는 기록상장의 관행화로 탈세와 점포의 불법전대, 수수료 과당징수 등 불·탈법을 초래하여 완전경쟁에 따른 가격결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형식적인 기록상장도 없이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가격횡포가 지방상인의 상경을 유도하여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를 낳는바, 이의 개선이 요망됨(한겨레신문 기획·연재 97.8.1, 26면).

■ 농수산물 유통의 다단계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산지~생산작목반~산지수집상~도매법인~중도매인~매참인~도매상~소매상~소비자 등으로 이어지는 9~11단계의 과다한 유통단계를 그대로 인정하여 우리농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요망됨(동양일보 해설 97.8.15).

※ 「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4~106면)·제94-4호(91~92면)·제94-5호(118면)·제94-6호(103면)·제96-1호(38면)·제96-2호(59~60면) 참조.

『농산물품질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수입의 급증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농산물품질관리규정을 분리하여 『농산물검사법』과 통합·보완하고, 국내 농산물의 품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수입 농산물과의 품질 차별화를 꾀하기 위하여 현행 '품질인정제도', '원산지표시제도', '표준규격출하제도' 등 3개 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농산물 품질관리와 함께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농림수산부, 무등일보 97.6.9).

『수산업법』 개정의견

■ 관행어업의 보상

관행어업은 양식어업의 면허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현행 『수산업법』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하여 관행 어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바, 관련 법규 재개정 등 해당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무등일보 해설 97.8.17).

『어항법』 개정 의견

■ 항구내 이용시설 제한

현행 『어항법』은 어항구역내에서 방파제·물양장등 기본시설과 항로표지·어구제작장·급유시설·수산물처리가공시설 등 기능시설, 어민복지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바,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서는 어항구역내에서의 해양관광시설 도입이 가능하여야 함. 행정기관과 사업자측에서 어선이용 등 기본적인 어항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항구역내 어항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함(제민일보 해설, 97.8.29).

건설·교통

『건축법』 개정 의견

■ 신축건물 조경·식수규정의 실효성 확보

『건축법』 제32조와 시행령은 대지가 2백㎡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시 의무 규정으로 일정면적 이상을 조경·식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건축 연면적 5천여㎡ 이상인 건축물의 조경과 수목 관리만을 시가 지도·감독하여 소규모의 건축물인 경우는 조경면적이 타용도로 전용되고 나무도 고사하거나 인위적으로 제거되어 관련규정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비용을 거두어 조경과 식수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법령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함(무등일보 해설, 97.7.22).

※ 「입법의견조사」 제1호(51면)·제8호(105~106면)·제94-1호(74면)·제94-5호(120~121면)·제94-6호(104면)·제95-1호(94면)·제95-2호(109면)·제96-2호(61~62면)·제96-3호(65면) 참조.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의견

■ 갯벌간척의 이익형량

『공유수면매립법』이 매립사업자에게 갯벌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전국민의 공유재산인 갯벌의 소유권을 특정기업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그 타당성 여부가 의문시되며, 택지나 농업용지, 공업용지 조성을 명분으로 하는 갯벌의 간척이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되어 막대한 복원비용을 요하게 되는 바, 이익형량시 타당성이 없음(김상훈 환경부 사무관, 동아일보 97.8.8, 25면).

농기계 면허증제 도입관련 입법의견

■ 농기계 면허증제의 도입

농기계 운전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안전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각종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농기계를 이용한 장소이동이나 수확물 운반이 일반 자동차도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오토바이운전자 수준의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의 교육을 위한 면허증제도가 필요함(경상남도 청도군, 부산일보 97.8.14).

『자연공원법』 개정의견

■ 국립공원 보존

국립공원의 기능이 현재 유원지나 관광지 역할로 치중된 것으로부터 자연생태계보존지역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하여 ① 정부의 국립공원 관리부서를 현재의 내무부에서 환경부나 산림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②관리의 목표도 이용자들에게 레크리에이션을 충족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으로 재설정하며, ③'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국립공원의 수용능력의 한도내에서만 이용자가 방문하도록 하고, ④이를 감안하여 집단시설지구면적을 점차 축소하며,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 ⑤이용자들의 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함(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조선일보 97.8.22, 5면).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111~112면) · 제96-2호(70~71면) 참조.

토지공급확대방안관련 입법의견

■ 산지·구릉지 개발 민간참여 유도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부족 및 고지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의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축으로 한 용도지역 정비, 개발계획체계 정리, 개발법령 정비, 세제 개선 등 지원체계를 이하와 같이 수립하여야 함.

〈도시지역 확대 및 준농림지의 계획적 개발〉

전국토의 4.8% 수준에 머물고 있는 도시용지 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준농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하여 광역시 및 대도시, 도농통합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준농림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농지로서 생산성이 떨어진 농지는 도시적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전용 허가도 시·군·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산지 및 구릉지 개발 활성화〉

산지중 개발이 가능한(전국토의 2.8%) 산지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 면적의 14% 해당하는 준보전임지를 도시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이용 관리지침'을 마련하며, 산지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을 민간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감면기준도 준보전임지 70%이상 활용에서 50%로 하향조정함.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도시개발법(가칭)』을 제정하여 토지개발시행자와 개발수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절차도 투명화·단순화 함. 토지개발 방식은 종전의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비축을 확대하기 위하여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은 매입한 토지를 민간에 공급할 때 종전의 분양방식에서 임대위주로 전

환하는 방안을 마련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민간이 제한적 토지수용권과 개발계획 제안권도 소유함.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제 개선〉

토지의 장기 보유를 억제하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관련 세금 과세 중심을 취득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여 취득세 과세율은 낮추고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높여감.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을 현행 공시지가의 32% 수준에서 60~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지나 산지를 도시적 용지로 전용할 때 내는 부담금중 일정액을 도시기반시설 설치기금으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도시용 토지를 개발함.

〈토지용도 지역·지구 단순화 및 규제완화〉

70여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1백60여개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토지이용 목적과 규제수단별로 단순화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개별법으로 지역·지구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역·지구 지정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지구의 지정시 폐기시점도 명확히 하는 '지역·지구 일몰제'도 함께 도입함. 전국의 토지를 보존 또는 개발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토지이용 우선순위를 정한 뒤 번호(1~5)를 매기는 코딩시스템(Coding System)도 시행함.

: 이상 국토개발연구원,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21세기대비 국가과제 공청회자료, 97.8.21. ; 한국경제 97.8.22, 4면).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의견

■ 항공안전국 신설

①항공사고의 독립적인 조사·검사를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개선하고 항공사고 조사 및 검사를 전담할 '항공안전국(가칭)'을 설치함. ②항공사고 방지책으로 도입항공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술확보 및 인증절차의 체계화 하며, ③'항공안전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항공사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검토하고 사고대책을 체계화함(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문화일보 97.8.8, 2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의견

■ 해양레저기구 안전법규 불비

무게 5t 미만의 소형 레저선박은 현행 『선박법』과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바, 면허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고 운항해역이 설정되지 않아서 해수욕철에 제트스키 등이 해수욕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경찰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고, 가해자의 보상문제 회피시에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 등의 소극적인 대응수단만을 갖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법규의 보완의 요망됨(부산일보 해설, 97.6.21).

※ 「입법의견조사」 제2호(54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

『멀티미디어개발육성을위한특례법(가칭)』 제정의견

■ 멀티미디어폴리스 조성

첨단정보통신산업단지를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정보통신업체를 유치·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을 신설하여 ①멀티미디어 폴리스에 입주한 외국기업과 외국인의 해외자본 유입 및 발생이익의 해외송금, 재산취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등 관련 법규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②폴리스내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자격과 혜택을 부과하고 폴리스내의 외국인은 무비자 출입 및 취업자유가 보장되도록 함. ④폴리스입주기업의 해외상업차관도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증권의 발행을 보장하며 개발부담금, 농

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특례조치 하고,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의 전기통신료등 공과금의 할인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특별상각을 허용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모금되는 기부금의 손익 사업을 허용하도록 함.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고속통신망시설의 구축과 최첨단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⑦폴리스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는 국유·공유 재산과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장기임대·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할 수 있도록 함. ⑧범정부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멀티미디어 폴리스추진위원회를 두어 유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관계정책의 수립 변경을 심의하도록 함(문화일보 기획·연재, 97.8.18, 11면).

『민·군겸용기술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한시적인 조세·금융지원

군수규격 개혁과 규격 획득절차 간소화,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금융 지원, 기술개발기금 조성, 방위산업체 지정 폐지 등을 통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하여 방산기술의 체계화와 기술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여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함(통상산업부·국방부·과학기술처, 문화일보 97.7.5, 1면).

환 경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댐건설시 지역개발사업 의무화

수몰로 인하여 이주민을 발생시키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댐 건설시 댐건설사업 시행자가 기존의 보상 외에 농로확장포장, 주택개량, 농지조성, 간이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 등의 공공시설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을 대체하여 적용대상이 다목적댐 뿐만 아니라 생활 및 공업용수댐까지 포함되도록 함(건설교통부, 무등일보 97.8.10)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존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

독도 등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타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환경부장관은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존계획을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김중위 신한국당 의원외 여야의원 14명, 조선일보 97. 8.5, 1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가칭)』 제정의견

■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문제점

특별조치법안이 상수원을 중심으로 거리에 비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직접 영향구역, 상수원 간접 영향구역으로 구분한 것은 환경적, 생태학적 조건의 차이, 오염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오염원의 위치와 오염부하량의 정도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총량규제하는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만 오염원의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전체수계내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배출수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임호 부산환경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시민의 신문 97.6.16.)

※ 「입법의견조사」 제97-1호(44면)·제97-2호(47-48면) 참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오·폐수 배출량의 기준 조정

축산 오·폐수 배출의 척도가 되는 사육두수의 고려 없이 정화조시설기준이 축사면적으로만 결정되고 있는 바, 법률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양자를 함께 기준의 근거가 되도록 함

(동양일보 해설, 97.8.4).

※「입법의견조사」제7호(71면)·제96-2호(75면) 참조.

『원전보상법(가칭)』 제정의견

■ 핵발전소 건설관련

지금까지는 안전성 보장과 적정한 피해보상은 도외시 된 채, 핵발전소의 추가건설만을 강행하여 온 바, 온배수 저감방안 마련과 원전냉각기계통의 모래유입 방지대책, 온배수로 인한 어민피해의 적정한 보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안중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온배수의 배출허용기준 수립강화, 원전의 주변환경조사 지침중 불합리한 부분 개정, 지진과 파쇄대 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전보상법(가칭)』의 제정을 촉구함(김인곤 의원외 75인, 광주일보 97.7.29).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종교환경의 파괴

자연환경과 함께 문화환경, 종교환경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종교환경은 자연환경과 비견하여 종교본래의 목적인 수행과 포교는 물론, 이로 인한 문화환경 가치를 포괄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종교환경은 각 종교단체 차원을 넘어 국가가 특별히 보전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급증하는 개발사업으로부터의 종교환경을 보호하여야 함(조선일보 사설 97.8.11, 3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쓰레기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예치금' 제도가 ①예치금 지급 대상자를 예치금을 납부한 제조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시키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물량이 1천kg 이상인 경우에만 출장 회수를 하여 재활용 폐품 수거에 역할과 비중이 큰 가정이나 소규모 소매인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으며, ②일반가정의 경우는 쓰레기를 장기간 보관할 장소의 확보가 어

렵고 재활용 물류장으로 이송하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인 바, 각종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사 폐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감안한다면 예치금 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생산업체들이 예치금 반환을 위하여 폐제품 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무등일보 해설, 97.8.27).

※ 「입법의견조사」 제3호(70~71면) · 제4호(40~41면) 참조.

『폐기물관리법』 개정의견

■ 환경관리체계의 일원화

- 지방의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체간의 이원화된 환경관리 · 지도 · 감독으로 인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환경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체로의 업무이관이 바람직함(동양일보 해설 97.7.7).
- 수질환경의 보전과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환경부가, 소음진동규제와 토양환경보전, 오수 및 축산 · 폐수처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 관리체계는 업체들의 업무혼선을 초래하고, 환경사고발생시 자치단체에서의 즉각적인 조치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지방공업지역내 환경업체의 관리감독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제외한 일반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권한을 가지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함(동양일보 해설 97.6.3).

※ 「입법의견조사」 제3호(72면) · 제94-6호(114면) · 제95-1호(98면) 참조.

보건 · 복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묘지허용면적 대폭 축소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현행 묘지 허용면적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여 공원 · 공동묘지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등 장묘제도를 개선하여 ①현재 허용면적이

24평인 개인묘지는 6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 이내로 축소하고 가족납골묘는 9평 이내로 제한하되 위반시는 처벌하고, ②화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마다 공설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지나 화장장·납골당 등을 신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제공하고 시설비도 지원하도록 함(보건복지부, 광주일보 97.8.29).

※ 「입법의견조사」 제6호(96면)·제94-5호(125면)·제96-3호(71~72면)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견

■ 복지행정의 미비점 보완

사회복지서비스는 법규상 공급의 주체, 특히 민간 법인과 시설에 관한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국가의 재정 책임, 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전담할 위원의 구성, 권한과 책임, 회기 등에 관한 보완이 있어야 함(윤찬영 전주대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국회보건복지포럼 주최 공청회, 시민의 신문 97.6.9).

『의료법』 개정의견

■ 병원 적축물의 관리 강화

- 병원의 적출물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소각처리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의 경우는 자체 소각하고, 소각장이 없는 중·소규모의 병·의원들은 각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은 경고, 면허정지 등의 강한 처벌을 제외한 시정지시만을 행정처벌로 규정하여, 병원들의 고질적인 적출물 관리위반을 방치하고 있고, 현행 『의료법』도 적출물관리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하여 최고 3백만원 미만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바, 제재수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무등일보 해설 97.7.25).
- ①병원의 적축물처리업자 지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낙동강환

경관리청에서 받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리가 어렵고, ②적축물처리업은 일정규모의 시설과 장비만 갖추면 쉽게 지정받을 수 있어서 처리업체의 영세화와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③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실험동물사체 등으로 반출되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적출물규정에서 제외되어 관련 규정의 강화가 시급한 바, 적축물처리업계 요건을 강화하고, 업무를 일원화하며, 적축물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야 함(부산일보 해설 97.6.11).

※ 「입법의견조사」 제3호(73~74면)·제4호(40면)·제6호(100면)·제7호(71면)·제94-3호(123~124면)·제95-2호(119면)·제97-2호(52~53면) 참조.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뇌사자 장기이식의 합법화

①장기 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허락할 때는 이식 대상자의 지정도 가능하게 하며, ③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의사표현 능력이 있으면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구하여 가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함(무등일보 해설 97.8.4).

※ 「입법의견조사」 제94-2호(112~113면)·제94-5호(128면)·제95-2호(119~120면)·제96-1호(46~47면)·제96-2호(81면)·제96-3호(74~75면)·제97-2호(52~53면) 참조.

※ 〈참고자료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 참조.

『전염병예방법』 개정의견

■ 소독의무규정 개선

계절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소독은 시장이나 공동

주택, 가축사육시설, 집단급식소 등의 경우에 하절기 월 1회 소독으로는 방역에 효과적이지 못한 바, 대상에 따른 규정의 보완이 요망됨(경상남도 청도·경산, 부산일보 97.7.4).

※ 「입법의견조사」 제9호(110면)·제94-5호(128면) 참조.

『정신보건법(가칭)』 제정의견

■ 정신보건정책의 전환

정신보건 정책은 입원수용 위주에서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마련,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이충순 용인정신병원 기획실장, 동아일보 97. 6.3, 39면).

※ 「입법의견조사」 제1호(55면)·제3호(72~73면)·제4호(39~40면)·제13호(94~95면)·제94-1호(80면) 참조.

『학교보건법』 개정의견

■ 학교보건법 적용지역의 확대

『학교보건법』 정화구역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학교정문에서 최소한 2~3㎞에는 유해업소를 무조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안산 YMCA, 한국일보 97.6.5, 31면).

※ 「입법의견조사」 제94-1호(80~81면)·제95-1호(98면) 참조.

법원·법무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의견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①가정폭력에 대하여 형사특별법 위주로 대처하려는 견해는 복지주체인 국가의 책임을 방기할 우려가 있어서 복지법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고, ②가정폭력의 현장상황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찰관의 즉시 출동 및 개입, 법관의 영장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임시적인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인도하도록 함. ③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체계로 강행할 경우는 가족해체의 야기가 우려되는 바,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노인·아동이 사회적·구조적인 불평등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및 가정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④수사기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안일 경우에는 각종 보호처분을 신청하면 형사사건 절차와는 무관하게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의 처벌을 원할 시는 『가사소송법』상의 가사 신청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⑤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를 구속처벌하지 않기를 원하거나 가정폭력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금지명령(접근금지명령,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행사자 지정명령), 금전지급명령, 상담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단기격리처분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시민의 신문 97.7.21).

※ 「입법의견조사」 제13호(96면)·제96-1호(47면)·제96-2호(81면)·제96-3호(75~76면) 참조.

『공익법무관에 관한법률』 개정 의견

■ 공익법무관의 업무영역 확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공익법무관의 근무기관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으로 국한하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자문·해석 등 법무전반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함이 바람직함(이재경 공익법무관, 법무부 주최 『제1회 전국검찰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 발표문; 법률신문 97.6.17).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개정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중앙정부에 비해 불리

- 지방자치단체가 소제기시 국가는 첨부하지 않는 수십만원 상당의 인지를 붙이고 합의사건에서도 국가와는 달리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국가상대의 행정소송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1·2심에서 승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집행 선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치단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바, 이의 개정이 요망됨(제민일보 해설 97.8.8).
-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①관계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3천만원이상의 합의사건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②『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국가는 소송 수행시 인지대와 공탁금을 면제받으나, 지방자체단체는 제외되며, ③『행정소송법』 제43조의 가집행 선고시 국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 등 불합리한 지위를 갖는 바, 이의 개선이 요망됨(대구 중구청, 영남일보 97.8.6).

※ 「입법의견조사」 제97-2호(55~56면) 참조.

『국적법』 개정 의견

■ 국적법 조문의 현실화

현행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체약국은 여성에게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되고, 『국적법』 제3조중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자는 결혼과 동시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급증하는 국제결혼의 추세에 맞추어 재검토되어져야 하는 바, 배우자 역시 남녀 차별없이 일정한 조건과 자격의 구비시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오양순 신한국당 의원, 중앙일보 97. 8.6, 7면).

※ 「입법의견조사」 제13호(97면)·제94-6호(115~116면)·제96-3호(79~80면) 참조.

『뇌물방지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OECD의 뇌물방지협약 타결 대비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무원의 범위에 정당인과 공직 후보자들도 포함하여 법제정하고자 함(재정경제원, 문화일보 97.8.27, 2면).

『법률구조법』 개정의견

■ 형사사건의 법률구조

기소사건에 한하여 실시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규정을 수사단계의 피의자로까지 확대하여 경비문제 등 제때 변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대한법률구조공단, 무등일보 97.6.2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관광지도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관광지도 단속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사업으로 분류된 운수업체 및 유람선, 승마장, 농원, 토산품점 등에 대한 관광부조리 행위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함(법무부, 제민일보 97.8.13).

※ 「입법의견조사」 제96-3호(82면)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성폭력피해자의 정부보상

살인이나 일반폭행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바, 형평성의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도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는 물질적보상뿐만 아니라 성폭행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이나 자폐증 등 정신장애까지 치유할 수 있는 보상까지 내용으로 하여야 함(강원일보 해설, 97.6.17).

※ 「입법의견조사」 제1호(59~60면)·제2호(57면)·제7호(72~73면)·제8호(120~121면)·제9호(111~112면)·제13호(103~104면) ·제96-2호(83~84면)·제96-3호(82~83면) 참조.

『아동학대방지법(가칭)』 제정 의견

■ 아동학대 방지

『형법』과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령의 아동학대관련 규정이 구체성 결여와 범위의 모호, 처벌의 미약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바, ①아동학대의 내용을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손상,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범죄, △아동의 노동력 착취,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방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학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②교사, 의료인, 아동상담소 및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아동학대의 발견시는 즉시 전문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6시간내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③폭행·상해치사·폭행치사 등에 대한 범죄항목과 처벌조항을 세분화하여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④상습적인 아동학대자에 대하여 법원이 아동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 및 동거, 통신 등 아동에 대하여 접근을 30~180일 까지 금지하는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양육금지, 인도, 관찰, 상담 및 수강명령 등으로 처분함. ⑤국가나 자치단체가 학대아동의 발견, 치료, 예방, 신고 등을 전담할 전문아동보호기관을 신설하거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등 비영리법인을 보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정의화 신한국당의원, 문화일보 97.8.30, 1면).

※ 「입법의견조사」 제96-3호(84면) 참조.

『양형기준법(가칭)』 제정의견

■ 판사별 형량의 편차 축소

형사재판이 판사에게 과다한 재량을 부여하여 변호사와의 친분정도가 형량의 주요 변수가 되는 등, 낙후된 수준의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전관예우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의 선고로 범죄억제 효과가 경감되지 않도록 양형의 기준을 도입함(검찰, 문화일보 97.7.11).

※ 「입법의견조사」 제95-2호(126~127면) 참조.

『집단소송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의견

■ 피해자 대표의 소송수행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공통의 피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의 대표가 전체 피해자의 보상을 일괄제소하여 전체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불성실 공시나 부실경영 등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함께 공해배출 등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대표소송도 가능하도록 함(법무부, 경향 97.7.14).

※ 「입법의견조사」 제94-3호(107면) 참조.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도찰행위의 금지

- 이른바, 위험사회의 대표적인 범죄형태인 환경범죄와 같이, 정보화사회도 부지불식간에 위험사회로 치닫고 있으므로, 위험사회의 형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 등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야 함(장인태 변호사, 한국일보 칼럼 97.7.19, 22면).
-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도청'과는 달리, 현행법상 '도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바, 공적 및 사적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도청·촬영·무단녹화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서부지청 입법의견서, 동아일보 97.7.26, 38면).

※ 〈참고자료 3〉 도찰행위의 금지를 위한 입법제안 참조.

『형사소송법』 개정의견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위헌

재판단계에서의 구속은 수사진행·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되 검사에게 신청권을 주어 견제권한을 갖도록 운영함이 합리적인 바, 수사단계에서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법 제201조제2항 및 재판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70조 등은 △『헌법』 제12조제3항에서 체포·압수·수색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것과 △동등하게 인권옹호기관의 성격을 가진 검사와 판사에게 상호견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느 기관도 단독으로 인신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정신의 표현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임(이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 『미국의 인신구속제도』 97.6.29)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을 임의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피의자 신문대상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결정에 대한 법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대검찰청, 강원일보 97.6.30).

※ 「입법의견조사」 제12호(110면)·제13호(105~106면)·제92-2호(116~117면)·제94-1호(85면)·제94-5호(131~132면)·제94-6호(120~121면)·제95-2호(127~128면)·제95-3호(108면)·제96-3호(89~90면)·제97-1호(48~49면)·제97-2호(61~62면) 참조.

〈참고자료 1〉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1.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조정

○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 중심으로 권한의 대폭 이양 추진, 권한 이양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재원, 인력도 병행이관

· 이를 위해 총무처에 설치된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국무총리 산하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에 통합하여 지위를 격상

· 또한, 『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획기적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관 추진

○ 한편, 현재의 사무구분을 국가사무, 위임사무, 자치사무 및 공동사무등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 중앙-지방간 및 시도-시군구간 사무 및 기능 배분을 위한 사무 실태조사 실시 추진('97년중 완료 계획)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가능한 한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해야할 경우에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

· 기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에 통·폐합을 단계적으로 검토

2.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

○ 지방재정 자립이 지방자치발전의 근간이므로 다양한 재정확충방안 추진

·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기능 조정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교부세율 조정방안 검토

·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하여 나가되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강구

· 재정운영 실태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 자치단체별 재정력 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

- 진단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또는 특별지도 관리

3.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관리역량강화

o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확대 등 지방금융기능을 활성화
  ·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보호·육성을 위한 지속적 제도 보완
o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자체노력을 강화하여
  ·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부담의 철폐·완화
  · 관내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간의 컨소시엄 구성 등 연계 체계 구축
  · 전통문화, 기술창작물 등 향토 지적재산과 지역내 유휴자원의 생산화 방안 강구
o 지역경제인들의 지방경제발전에 대한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 지방기업의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4.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의 확대

o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
  · 지역의 중요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의 제정 추진
  ·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입 검토
o 그리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주민권리장전』을 도입

5.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 검토

o 주민편의 확보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방안 연구 검토
  · 향후 전자주민카드 시행 및 지역정보센터 구축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
o 대도시 자치행정은 도시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증진, 정책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

○ 조직의 탄력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소통·폐합으로 자치단체 조직의 경량(Slim)화 지속 추진

·자치단체별 중기인력 운용계획 수립 및 표준정원제 준수

6.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여건 마련

○ 지방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의회·명예제'와 '소의회·유급제'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비교 검토, 우리실정에 맞는 의회제도로 발전

○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적정 회기일수에 대한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 범위의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도 함께 연구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정례적 사전협의제도 정착등 역할관계 재정립 방안 강구

7.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4대 지방선거의 동시 또는 분리선거 방식을 심층분석 연구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간 보장해주는 방안 검토

○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로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연구

○ 그리고 선거일과 당선자의 취임일간의 공백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현행 단체장 선거일 조정

8.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기능 강화

○ 자치단체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기능 보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수시 협의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단체장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총리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두어 분쟁 및 갈등을 조정

○ 우수인력 확보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우수 민간인력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전문 계약

공무원제 확대, 민간 전문가의 공직파견제 실시

· 아울러 중앙과 지방 · 시도와 시 · 군 · 구간 인사교류 방안 제도화 추진

9.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 검토

○ 자치단체 행 ·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과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자치단체에 제공

〈조사분야 및 평가항목(예시)〉

· 공무원의 청렴성 · 행정의 봉사성

· 재정의 건전성 · 규제혁파 등

○ 한편 매년 연발 공신력 있는 전문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및 평가를 조사하게 하여

· 그 결과를 익년도 초에 공표하는 방안 검토

10. 21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 추진

○ 국가정보망과 전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정보센타를 구축

-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
- 기상, 산업 및 농사정보등과 각종 행정정보(12개분야 118종)를 적시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
- 지역정보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금' 조성

○ 전산 · 정보망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추진

-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생활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민원서비스의 One-Stop화
- 전자주민카드의 보급으로 각종 증명서류 Zoro화

○ 또한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재택교부제' 실시

: 이상 내무부, 21세기 대비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추진계획, 1997.6.27.

〈참고자료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1. 제정 이유

현대의학의 발달로 장기이식은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장기이식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식장기의 공급부족으로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이식사업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장기매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적인 장기이식사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2. 주요 골자

○ 누구든지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장기기증자와 장기수증자간에 장기를 매매하는 경우와 타인의 장기 매매를 알선·교사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후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49조).

○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살아 있는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은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가족에 대해서만 장기기증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 사망한 자의 장기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배우자, 성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성인인 형제자매 중 앞선 순위의 유족 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안 제16조 및 제17조).

o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자 판정을 받은 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뇌사판정기준은 법률에 정하였음(안 제19조).

o 뇌사자가 장기적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하였음(안 제19조).

o 뇌사자 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내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판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0조).

o 장기이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 법조계 및 장기이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된 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안 제22조).

o 생명윤리위원회안에 장기이식심사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미성년자 장기기증 동의, 살아 있는 자의 장기기증 대상자 선정 동의)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안 제23조).

o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뇌사자 판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24조).

o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관리업무와 장기이식에 필요한 의학적 정보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5조).

o 장기의 수여와 공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장기이식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관리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음(안 제28조).

o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은 장기이식관리본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음(안 제29조).

o 장기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이식 의료기관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안 제32조).

o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위반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음(안 제47조 및 제48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타인의 질환 회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그 적출한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이식의 실시에 공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도적 정신에 바탕을 둔 장기이식사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장기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②살아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장기기증에 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③장기기증은 장기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

④장기를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장기의 이식은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절히 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라 함은 각기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소의 독립성을 가진 신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장기와 기타 신체의 조직을 통칭한다.
2. "장기이식"이라 함은 환자의 질환 회복을 위하여 장기 기증자로부터 특정한 장기를 적출(이하 "장기의 적출"이라 한다)하여 그것을 환자에게 이식(이하 "장기의 이식"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이라 함은 타인의 질환 회복을 위하여 대가성 급부 없이 자기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라 함은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차 장기기증 의사만을 표시하여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을 목적으로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검사를 거쳐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장기이식 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질환 회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장기이식 대상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자중에서 장기를 이식하기로 선정된 "장기공여자"와 장기이식대기자중에서 장기를 이식받기로 선정된 "장기 수증자"를 통칭한다.
8. "뇌사자"라 함은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여 모든 의학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
9. "담당의사"라 함은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였거나 유족의 동의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를 기증할 사체를 검안한 의사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이식 대기자에 대하여 그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장기이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장기이식 수술비용, 수술후의 치료비용 등 관련비용 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공여자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보조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사 등의 의무) ①의사는 장기이식을 수행함에 있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최대한 활용, 진료상 필요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한다.
②장기의 적출이나 이식에 관여하는 자는 시체 또는 장기를 취급함에 있어 특히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판매행위금지) ①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의 사체와 뇌사자로 판정된 배우자 및 2촌 이내 친족을 포함한다)의 장기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에게 이식할 장기를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에게 이식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장기를 제공받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적출되었거나 적출될 타인의 장기를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알선·교사·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계됨을 알고서도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장기기증동의전 설명) 장기 적출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받기전에 장기기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현재의 신체상태, 수술의 긴급성, 수술의 내용, 장기적출후의 치료계획과 생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동의의 철회) 장기기증에 동의한 자는 언제든지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장기적출이 강제되지 않는다.

제9조(기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①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록은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장기를 이식하거나 적출한 의료기관의 장과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가 각각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는 자는 장기이식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배우자, 직계존속, 성인인 직계비속, 성인인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이식대상자 본인이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본인의 치료와 회복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관리본부 종사자 등 장기이식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업무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장기공여자와 적출장기
2. 장기수증자와 이식장기
3. 기타 장기공여자와 장기수증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전항에 규정한 장기이식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장기이식관계자"라 한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2. 재판과 관련되어 법관이 제출명령을 하였을 때
3. 장기공여자 또는 장기수증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가 있는 때

제11조(장기적출의 제한)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는 전염성병원에 감염이 되었거나 기타 장기이식에 부적합한 장기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용하지 않은 장기의 처리) 장기를 적출한 후에 장기의 이식에 사용되지 아니한 장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제13조(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①살아있는 자로 부터 장기를 적출하고자 할 때는 장기기증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부, 해산부 및 산욕부
2. 심신장애인
3. 미성년자
4. 장기를 적출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장기이식이 부적당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직계혈족·형제자매·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인척 이외의 자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의 특례) 이 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기증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장기를 이식할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생명윤리위원회에의 심사요청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결과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장기기증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관리본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생명윤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장기이식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 요청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제16조(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1. 사망한 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였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 사망한 자가 생전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유족이 사망한 자의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동의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동의는 기증문서 등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장기기증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의 증언에 의한다.

제17조(유족의 범위 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유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②이 법에 규정된 유족의 동의는 제1항 각호의 앞선 순위의 유족 2인 이상(유족이 1인일 경우에는 1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 이외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8조(부검 또는 검시의 우선)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의 적출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부검 및 검시에 우선할 수 없다. 다만, 적출할 장기와 사망의 원인과 상관이 없고 부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 및 유족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제4장 뇌사자로 부터의 장기적출

제19조(뇌사자로 부터의 장기적출) ①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자로 판정된 자(이하 "뇌사자"라 한다)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뇌사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뇌사자의 장기적출에 대하여는 제2장 살아있는 자로 부터의 장기적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해 뇌사자로 판정된 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뇌사자의 판정 등) ①뇌사자 판정은 담당의사의 요청에 의하여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뇌사자 판정을 요청받은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기준에 따

라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에 따라 뇌사자 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은 뇌사자의 판정을 뇌사판정기준에 따른 담당의사와 관계전문의 2인 이상의 의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시 뇌사판정기준에 따른 판단은 관계전문의가 한다.

④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뇌사판정을 한 경우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뇌사판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뇌사판정을 받은 자가 장기적출로 사망한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관계전문의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뇌사자 판정에 참여한 의사는 자신이 판정에 참여한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뇌사판정기록의 작성·보존) ①뇌사자의 판정에 참여한 자는 뇌사판정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뇌사판정서 사본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관리본부에 보고하고 그 원본과 뇌사판정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뇌사판정서의 작성과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장기이식 관련기관 및 절차관리

제22조(생명윤리위원회) ①장기이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장기이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장기이식 관련정책에 관한 사항
2. 뇌사판정 의료기관,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지정 및 허

가기준에 관한 사항

3.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장기이식관리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기이식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장기이식심사위원회) ①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장기이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장기이식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장기이식심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이식관계자와 조사요구를 받은 자는 장기이식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장기이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뇌사판정 의료기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뇌사자 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은 뇌사판정 의료기관내에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뇌사판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단,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판정 심의 요청시 뇌사판정 위원회의 위원인 의사가 제20조제6항의 규정된

뇌사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하여야 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하고 뇌사판정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전문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은 제16조 규정에 따라 뇌사자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경우에 지체없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관리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뇌사판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장기이식 등록기관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관리업무 및 장기이식에 필요한 의학적 정보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등록기관의 업무)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관리
2.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장기이식에 필요한 검사,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관리
3.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이식 대상자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과의 연락업무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관리본부에 대한 각종 장기이식 관련 정보의 보고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장기이식 등록기관의 관할지역, 등록대상 장기의 종류 및 업무의 범위 등을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장기기증 등록자 또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등록한 후에 지체없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이식 관리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방법) ①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 등록자나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에 따르는 검사와 등록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기이식 관리본부의 설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의 수증과 공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등록기관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관리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이식 대기자의 명부 및 관련 데이터의 총괄
2. 등록기관 및 제32조의 규정에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총괄 관리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관리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①장기기증자와 장기수증자 및 장기이식 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관리본부의 대상자 선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리본부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부터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통보를 받은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없이 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은 장기이식의 적합성,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본부의 대상자 선정없이 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본부에 그 취지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장기이식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제28조제3항에 의하여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통보를 받은 해당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31조(등록자 명부 작성 등) ①관리본부의 장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기증희망자, 장기기증 등록자와 장기이식 대기자의 명부(이하 "장기이식 대상자 명부"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장기이식 대상자 명부를 열람시키거나 그 내용 파악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허가 등) ①장기이식 수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하 "장기이식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식장기의 종류를 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

③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장기이식수술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장기이식 수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기이식 의료기관중에서 장기이식센터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장기이식 의료기관의 허가요건·허가절차와 장기이식센터의 지정요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기이식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이식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본부, 등록기관, 장기이식 의료기관, 뇌사판정 의료기관(이하 "장기이식 관계기관"이라 한다) 및 장기이식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장기이송체계의 확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장기이송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송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지도와 감독

제35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기이식 관계기관 및 장기이식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와 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이식 관계기관이나 장기이식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장기이식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기이식 관계기관 또는 장기이식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관리본부를 제외한 장기이식 관계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본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협조의 업무) 장기이식 관계기관 및 장기이식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이식 관계기관 또는 장기이식 관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를 위반하여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가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2.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서를 관리본부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관리본부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관리본부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를 위반하여 관리본부의 장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보존한 경우
7.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수술에 관한 사항을 관리본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동 규정에 정한 바를 위반하여 보고한 경우

제40조(지정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업무의 범위 등을 위반한 때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불응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을 위반한 때
2.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할 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7장 보 칙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비용의 부담 등) ①제27조제2항에 의한 장기기증 등록자 필요한 검사비용과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 의한 장기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29조제2항에 의해 해당 장기를 이식받기로 선정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장기를 이식받기로 선정된 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비용부담은 국가가 대신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장기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의료보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의료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증자는 장기적출로 인하여 상실된 장기공여자의 수입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장기이식 관리본부의 장에게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이식관리본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장기기증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비)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등록비의 납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료기관의 협조)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질환의 회복을 위하여 장기를 이식받기를 원하는 자 또는 장기기증자 본인, 가족 또는 유족으로부터 등록안내, 등록기관 알선 등 장기이식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최대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벌 칙

제46조(총칙)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서 이 법에서 벌칙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벌칙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4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 또는 담당의사 및 관계전문의가 이 법에 정한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뇌사자 판정을 한 경우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의가 고의로 뇌사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자 판정을 하게 한 경우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 또는 담당의사 및 관계전문의가 이 법에 정한 뇌사판정기준을 업무상 과실로 위반하여 뇌사자 판정을 한 경우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의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자 판정을 하게 한 경우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①제6조제3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를 제공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를 제공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장기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를 적출한 자
2.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동조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를 적출한 자
4.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장기를 적출한 자

②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망한 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뇌사자 판정을 실시한 경우
3. 제20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자 판정에 참여한 의사가 당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한 경우
4.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장기이식 수술을 위한 뇌사자 판정을 한 경우
5.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본부의 대상자 선정없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한 자
6.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본부의 장 또는 관리본부 종사자가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7.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장기이식 수술을 한 경우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업무이외의 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2.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이 아닌 자가 등록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본부의 대상자 선정없이 이식수술을 하고자 하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이 관리본부에 그 취지를 미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이식 수술을 한 자가 그 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이식 수술을 한 자가 그 기록을 5년 이상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한 자 또는 장기를 적출하게 한 자
4.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자
5.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검 또는 검시에 우선하여 장기를 적출한 자
6.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이 뇌사판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서를 관리본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와 뇌사판정기록을 1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이 명부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가 전염성 병원에 감염되었거나 장기이식이 부적합한 장기를 적출한 경우
2.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은 장기를 처리한 경우
3.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기이식 대상자 명부를 열람시키거나 그 내용파악 요구에 응한 자

제55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

업원이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가 장기기증 동의를 받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관리본부에 지체없이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관리본부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사실을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경우

②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의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뇌사판정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 제24조제3항에 의한 뇌사판정 위원회를 갖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뇌사판정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5조에 규정된 등록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는 이 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에 규정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별표 ; 뇌사판정기준(법 제19조제2항 관련)

아래의 선행조건과 판정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8호에 정한 "뇌사자"로 판정할 수 있다.

1. 선행조건

(1) 원인질환이 확정돼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가능한 급성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 요독성혼수, 저혈당성 뇌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 32도씨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5) 쇼크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2) 자발호흡의 불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 o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 o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 o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 o 전정안구반사(venstibular-ocular reflex) 소실
- o 모양체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 o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 o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

(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검사 : 자발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 검사로서 100% 산소 또는 95% 산소+5% 이산화탄소를 10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기관내관을 통해 6l/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불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

(7) 재확인 : 위의 (1)항 내지 (6)항의 검사를 6시간 경과후에 재확인하여도 동일하여야 한다.

(8) 뇌파검사 : (7)항에 의한 재확인후 뇌파검사 실시-평탄 뇌파 30분 이상을 지속

3. 소아에 대한 판정기준

o 판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판정을 실시하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후 2개월에서 1세 사이의 연평균은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되, 재확인전(판정기준 (1)항 내지 (6)항 검사후)과 후에 각각 판정기준 (8)항의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세에서 5세 소아는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상 보건복지부 의정국 의료정책과, 국민경제연구소 경제정책정보 97.8.5.

〈참고자료 3〉

도찰행위의 금지를 위한 입법제안

백화점 화장실, 호텔객실 등에 비밀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나 행동 등을 몰래 엿보거나 촬영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비밀카메라를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는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허가 설치업자를 포함하여 전국에 1만여개의 설치업자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향후 무선송신카메라 및 무선수신장치 등을 활용한 무단 盜視, 촬영 및 녹화행위 등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불순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다음과 같이 입법 방안을 검토함.

■ 제1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 『경범죄처벌법』에 "타인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함부로 도시,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구류 또는 10만원 이하 벌금)
○ 외국(일본) 입법례 있음
○ 처벌강도 약화로 실효성이 의문시됨

■ 제2안-형법규정 개정안

○ 『형법』에 "타인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함부로 도시, 촬영하거나 녹화한 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징역 또는 벌금형)
○ 외국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려움

■ 제3안-특별법제정안

○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대상을 타인간의 대화, 전기통신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본 사안과 같이 카메라에 의한 개인의 비밀침해행위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이러한 무단촬영, 녹화행위에 대하여도 특별

법을 제정하여 단속할 필요성이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을 흡수하는 가칭 『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공적비밀과 사적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도청, 도시, 무단촬영, 무단녹화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비밀카메라 관련 입법건의(서부지청 유병규검사).

〈주요항목색인〉

(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55
각종법령상의카르텔제도정비를위한특별법(가칭)의 제정 34
간접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등 25
개혁주체에 예산권한 부여 27
갯벌간척의 이익형량 44
계열간 거래가 조작 방지 34
공익법무관의 업무영역 확대 56
관광관련 법규·제도의 개선 시급 19
관광지도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58
관행어업의 보상 43
교육위원회 의결권 박탈 불가 23
구속영장실질심사제는 위헌 61
국가·지자체 동일세원 공유 18
국립공원 보존 45
국적법 조문의 현실화 57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필요성 29
기업분할제도 도입 38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38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34

(ㄴ)

납세자의 세무정보접근권 보장 27
농기계 면허증제의 도입 45
농수산물유통시장기능의 정상화 42
농수산물 유통의 다단계성 43
뇌사자 장기이식의 합법화 54

(ㄷ)
대통령권한의 분산 11
대통령친족의부당행위금지법안 11
댐건설시 지역개발사업 의무화 49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존 50
도찰행위의 금지 60
독립공채의 상환 32

(ㄹ)
리콜제도의 보완 40

(ㅁ)
매장문화재의 보호 20
멀티미디어폴리스 조성 48
묘지허용면적 대폭 축소 52

(ㅂ)
벤처기업의 조달입찰참여 39
변칙돈세탁 규제 타당 29
병원 적축물의 관리 강화 53
보험 예외인정 부당 31
복지행정의 미비점 보완 53
불합리한 해양관광개발 시책 19

(ㅅ)
사업자단체 기업규제 철폐 33
산지·구릉지 개발 민간참여 유도 46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문제점 50
성폭력피해자의 정부보상 58
세무조사 면제대상 확대 30
세정의 합리화 36

소독의무규정 개선 54
신축건물 조경·식수규정의 실효성 확보 44
실명제 무력화 32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보 13

(ㅇ)
아동학대 방지 59
언론전횡의 방지 21
OECD의 경성카르텔금지권고안 관련 33
OECD의 뇌물방지협약 타결 대비 58
오·폐수 배출량의 기준 조정 50
옥외광고물 관리권한의 지방이관 40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찬반의견 26
외국인 투자의 규제 40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43
2단계 금융개혁안 27
인간문화재 제도의 개선 19
인재지역할당제 12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12

(ㅈ)
자치구로의 양여금 지원 확대 13
재고도서 유통 전국체인망 설치 2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해결권 부여 40
전력사업의 독점문제 41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소지 12
정신보건정책의 전환 55
정치관계법의 대안 10
정치보복금지법안 10
종교환경의 파괴 51
주문형반도체(ASIC)산업 육성 및 지원 41

주민발안제 도입 15
주민참여의 제고 14
주민투표법의 선결과제 15
주민투표제의 효율성 15
중소기업 단서조항의 배제 31
중소기업여건의 고려 31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 17
지방예산 지원제도의 개선 13
지방자치단체의 공단환경관리 39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시설경비 부담 2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중앙정부에 비해 불리 57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 현직유지의 공정성 여부 10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촉구 결의문(서울특별시) 16
지방재정의 자주성 17
진입·퇴출·확장의 장벽 제거 38

(ㅊ)
차명거래의 불법화 30
차별대우금지법안 11
청소년보호법 적용상의 문제점 23

(ㅌ)
통신·방송위원회의 통합 21
퇴직금 일부 우선변제 25

(ㅍ)
판사별 형량의 편차 축소 60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51
폐원학원의 재설립 불가 24
피해자 대표의 소송수행 60

(ㅎ)

학교보건법 적용지역의 확대 55
학부모회의 법제화 22
한국은행 개편안 37
한국은행 행정기능의 위헌여부 28
한시적인 조세·금융지원 49
항공안전국 신설 47
항구내 이용시설 제한 44
해양레저기구 안전법규 불비 48
핵발전소 건설관련 51
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가칭) 제정의견 17
형사사건의 법률구조 58
형사소송법 개정안 61
환경관리체계의 일원화 52

입법의견조사 97-3 입법의견동향

1997년 10월 25일 印刷
1997년 10월 30일 發行

發 行 人 朴 松 圭
發 行 處 한국법제연구원
印 刷 處 (주)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값 5,0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28-2 93360